

##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공고

당사자		변경요청 내용
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이○희	1957.01.09.	등록요건 충족시 증빙서류 제출 (농지 실경작 아님)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확인 등을 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을 공고 하오니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공고기간(14일) 종료 후 14일간 변경등록하지 않을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될 수 있습니다.

※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·사무소(☎043-544-6060)

2020년 11월 4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장

